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1. 25.>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제3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비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5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수목원(입장료에 한정한다)	100분의 50
6. 국공립 자연휴양림(입장료에 한정한다)	100분의 50
7.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8.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